

군산시 공고 제2026-502호

「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「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」에 반영하고, 법령상 감면 근거가 삭제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신설(안 제7조의2)

-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,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.

나.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정비 (안 제8조)

- 제8조 제목을 “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

업 등에 대한 감면”으로 변경

- 재산세 경감률을 “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, 이후 3년간 100분의 25”로 조정

#### 다. 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, 제38조, 제75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 : 기획예산과(법무의정), 여성가족청소년과(성별영향평가) 협의 완료
- 라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- 마. 입법예고기간 : 2026.3.3. ~ 2026.3.24. (21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
(우편) 54078,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 세무과)  
(전화) 063-454-2422 / (FAX) 063-452-8162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  
(전자우편) [hailrey@korea.kr](mailto:hailrey@korea.kr)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재산세계(063-454-24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2.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3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##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로만 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을 “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50으로”를 “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20년 12월31일 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 <p>1. 2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의2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)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로만 한정한다.</p>
<p>제8조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.</p>

[별지 제2호서식]

#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안 제7조의2(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)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 100분의 50을 적용함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 
 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안 제7조의2(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)에 따른 예상 비용

-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(50%)에 따른 재산세 예상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.
  - 감면대상 :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
  - 2025년 재산세 감면액은 약 15만원(법정50%)이며, 2026년에는 조례 개정으로 감면율이 확대되어 약 30만원(법정50% + 조례50%)으로 예상됨에 따라, 추가 감면액은 약 15만원으로 추산됨.

나. 안 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에 따른 비용 영향

- 본 개정은 기존에 조례로 정한 경감률을 기간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, 기존 세입 감소 외에 추가적인 세입 감소는 없으며, 우리시는 2025년 기준 감면 대상이 없음.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	군산시 기획행정국 세무과장 서정석
연락처	(063) 454 - 2422

군산시 공고 제2026-504호

「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  
자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 
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**1. 개정이유**

- 상위 법령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개정 시행에 따라 군산시 조례의 ‘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의 명칭을 ‘군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변경

**2. 의견 제출**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기후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의견 제출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
(우편) 54078,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 기후환경과)

(전화) 063-454-3392 / (FAX) 063-454-6028

(전자우편) toocool1@korea.kr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후환경과 기후대응계(063-454-33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이 유	비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조례 제 호

##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2조에”를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군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군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제3장 <u>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-----.</p> <p>제3장 <u>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군산시 공고 제2026-565호

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
입법예고

1. 제정(개정·폐지)이유
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시설물안전법”이라 한다.)으로 개정(“18.1.18.)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의 제3종시설물로 일원화 되어 이에 맞게 조례 일부 개정
- 「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및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양성평등 및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등 공정한 자문을 위한 「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
-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른 일부 개정

2. 주요내용

- 자문단의 기능 중 대상 시설명 변경에 대한 사항(안 제2조)
  -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

- 「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및(안 3조),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반영(안 3조 및 15조)
  -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
 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내용 신설
- 사무분장 반영(안 제12조)
  - 민방위사회재난계장 → 중대재해관리계장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,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,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, 「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12조

### 4. 의견제출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안전총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

(우 편) 54078,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 안전총괄과)

(전 화) 063-454-4773 (팩 스) 063-454-6030

(이메일) jeong1062@korea.kr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(전화 063-454-47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조례 제 호

##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”를 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특정관리대상시설”을 “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“시설물안전법”이라 한다.)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며,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”를 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하되”를 “하되 한차례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회이상”을 “1회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5일전”을 “7일전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며,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.

1. 안전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2. 그 밖의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  - ④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회의실시 및”을 “회의일시,”로, “회의안전,”을 “회의안전 및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민방위사회재난계장이”를 “해당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담당 자가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비밀의 준수) 위원회의 위원,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<u>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‘자문단’ 이라 한다)</u>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75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각 호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</u>」(이하 “<u>시설물 안전법</u>” 이라 한다.) 제7조에 따른 <u>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시설물안전법</u> 제7조에 따른 <u>시설물</u>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<u>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.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각 호----- ----- <u>위촉하며,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</u>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4조(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되</u>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제6조(자문단회의) 회의는 매년 <u>1회이상</u>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	<p><u>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.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40조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임기) ----- ----- <u>하되 한차례</u> ----- . 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자문단회의) ----- <u>1회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<u>5일전까지</u>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2. ----- ----- <u>7일전</u> ----- ----- ---- 하며, <u>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.</u>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<u>1. 안전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</p> <p><u>2. 그 밖의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회의록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회의록에는 <u>회의실시</u> 및 장소, 출석위원, <u>회의안건</u>,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<u>민방위사회재난계장</u>이 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14조 (생 략)</p>	<p>④ 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</u>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/p> <p>제11조(회의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회의일시</u>, ----- ----- <u>회의안건</u> 및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간사와 서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담당자가</u> -----.</p> <p>제14조(비밀의 준수) <u>위원회의 위원,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제15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

군산시 고시 제2026-16호

# 도로명주소(부여·변경·폐지)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20일



군 산 시 장

○ 고시내용: 도로명주소 부여 18건, 변경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
별 도 첨 부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(☎063-454-398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2026. 2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주소고시일	이동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324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구율1길 1	20260219	건물신축	20070528	구율마을 소재	
2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63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총로 38 (내흥동)	20260213	건물신축	20191104	예전 내흥동에서 신 석기시대 패총이 발 견된 지점이라서 도 로명 부여	
3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13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1로 4 (오식도 동)	20260213	건물신축	20160323	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	
4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91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253 (오식 도동)	20260213	건물신축	20160325	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	
5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07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82 (오식 도동)	20260212	건물신축	20160325	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	
6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1695-1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창로 113 (산북동)	20260210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	
7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386-5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충량3길 27	20260206	건물신축	20070528	마을 지명인용	
8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505-213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73-45 (산북동)	20260205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	
9	건물번호 변경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안2길 44-1 (경암 동)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안2길 46-1 (경암동)	20260205	건물번호 변경	20100125	행정동명으로 서수 식 도로명 부여	
10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0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남군산로 1523	20260203	건물신축	20100125	새만금 발전에 대비 한 남군산의 대동맥 도로를 의미	

11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518-1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 20	20260203	건물신축	20070528	마을명칭에서 서수 번호사용	
12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439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30	20260203	건물신축	20100125	고려시대 생성된 마 을로 옛 지명은 무 장리	
13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657-4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말5길 16-2 (오식도동)	20260203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	
14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16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하포로 582-10	20260203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	
15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26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772-14	20260130	건물신축	20100125	군산시 동쪽을 관통 하는 도로	
16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22-16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61-3	20260130	건물신축	20090508	섬이름 이용	
17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1794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창로 110 (산북동)	20260130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도로명 부 여	
18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59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총로 70 (내흥동)	20260130	건물신축	20191104	예전 내흥동에서 신 석기시대 패총이 발 견된 지점이라서 도 로명 부여	
19	건물번호 부여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양동 246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양3길 14 (선양동)	20260130	건물신축	20100125	지명으로 서수식 도 로명 부여	

군산시 고시 제2026-24호

### 군산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군산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하고,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##### 가.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기정	1	군산선	일반철도	개정동 구역계	군산역 북측	개정역 군산역	6,900	170,383	건고526 ('67.7.25.)	
변경	1	군산선	일반철도	개정동 구역계	군산역 북측	개정역 군산역	6,874	169,615	건고526 ('67.7.25.)	

##### 나.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군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장( L ) : 감) 26m - 6,900m → 6,874m</li> <li>면적(㎡) : 감) 768㎡ - 170,383㎡ → 169,615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해 철도 저축구간 일부 폐지</li> </ul>

#### 2.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군산시 고시 제2026-28호

###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#### 1.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

##### 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 (실효 일자)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폐지	중로	1	7	20	보조간선도로	838	산북동 대1-8	산북동 대1-10	일반도로	산 북 신사가지	군산고210 ('96.6.1)	'23.1.1.
폐지	중로	2	28	15	집산도로	334	지곡동 중2-192	지곡동 중2-16	일반도로	지 곡 신사가지	군산고210 ('96.6.1)	'25.6.27.
기정	중로	2	122	15	보조간선도로	304	읍내리 534-19전 중2-121	읍내리 513-10전 대3-31	일반도로		전북고325 ('77.12.30)	
변경	중로	2	122	15	보조간선도로	153	읍내리 534-19전 중2-121	읍내리 513-10전 대3-31	일반도로		전북고325 ('77.12.30)	'25.6.27. (미집행 구간)
폐지	중로	2	121	15	보조간선도로	523	축산리 305-9구 대3-31	읍내리 534-34대 중2-122	일반도로		전북고325 ('77.12.30)	'25.6.27.
기정	소로	1	280	10	국지도로	1,291	중1-9	중1-9	일반도로	산 북 신사가지	군산고210 ('96.6.1)	
변경	소로	1	280	10	국지도로	1,013	중1-9	중1-9	일반도로	산 북 신사가지	군산고210 ('96.6.1)	'25.6.27. (미집행 구간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 (실효 일자)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폐지	소로	1	304	10	국지도로	165	구암동 중1-5	조촌동 중2-65	일반도로	세풍제지	군산고242 (‘03.4.17)	‘23.4.18.
폐지	소로	2	784	8	국지도로	352	수송동 대2-6	수송동 소2-492	일반도로	옥구선 철도변	군산고242 (‘03.4.17)	‘23.4.18.
폐지	소로	2	785	8	국지도로	487	수송동 대1-1	수송동 대2-6	일반도로	옥구선 철도변	군산고242 (‘03.4.17)	‘23.4.18.
폐지	소로	3	285	6	국지도로	67	구암동 316-52 중3-10	구암동 602 소2-296	일반도로		전북고136 (‘87.10.22)	‘20.7.1.

나.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 (실효일자)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3	제13광장	교통광장	개정동 대1-1호선종점	63,545	감) 4,154	59,391	건고228 (‘86.5.23)	‘20.7.1. (미집행 구간)

2. 실효일자 : 시설별 비고란 표시

3. 실효사유 :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

4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5.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(☎ 063-454-350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군산시 고시 제2026-29호

# 당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 
술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당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2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군산시장
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

3. 사업시행위치, 규모, 총사업비

- 가. 위 치 :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739-2번지 일원
- 나. 사업규모
  - 흙깎기 3,937m<sup>3</sup>, 구조물 터파기 139m<sup>3</sup>, 수로관설치 L=234m, 집수정 4조, 부대공 1식 등
- 다. 총사업비 : 800백만원

4. 사업기간 : 2025. 1. ~ 2027. 12.

5. 실시설계도서(설계예산서포함) :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

6.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## 7. 사업효과 분석

- 토사유실 및 산사태,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

## 8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25년	'26년	'27년 이후	비고
사업내용	· 용지보상 · 사면정비	· 기본 설계	· 용지보상 · 사면정비	· 사면정비	
총 사업비	800	20	780		
· 국 비	400	10	390		
· 지방비	400	10	390		

## 9.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

-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
-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(해빙기, 우기)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

## 10.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: 붙임참고

## 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(063-454-35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.

▣ 편입토지·물건조서 -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

1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당북리	739-4	전	629	71	신동립	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738-1				자연녹지
2	당북리	740-8	도	119	4	신동주	군산시 나운동 835 (주공3차) 123동 406호				
3	당북리	739-3	도	307	7	신동립	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738-1				
4	당북리	738-1	대	307	307	신이나	군산시 조촌로 214, 902동 901호				
5	당북리	86-1	임	7140	926	김중희외2인	군산시 구영4길 38				
6	당북리	88-3	임	571	571	김행철	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739-2				
7	당북리	88-11	임	5517	156	남평문씨 홍달공파중 중	나운동 834-1 대명4차아파트 101호				

군산시 고시 제2026-30호

# 내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 
술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내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2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군산시장
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

3. 사업시행위치, 규모, 총사업비

- 가. 위 치 : 군산시 사정동 산64 일원
- 나. 사업규모
  - 흙깎기 2,129m<sup>3</sup>, 구조물 터파기 447m<sup>3</sup>, 수로관설치 L=379m,  
집수정 6조, 부대공 1식 등
- 다. 총사업비 : 1,340백만원

4. 사업기간 : 2025. 1. ~ 2027. 12.

5. 실시설계도서(설계예산서포함) :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

6.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## 7. 사업효과 분석

- 토사유실 및 산사태,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

## 8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25년	'26년	'27년 이후	비고
사업내용	· 용지보상 · 사면정비	· 기본 설계	· 용지보상 · 사면정비	· 사면정비	
총 사업비	500	50	450		
· 국 비	250	25	225		
· 지방비	250	25	225		

## 9.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

-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
-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(해빙기, 우기)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

## 10.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: 붙임참고

## 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(063-454-35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.

▣ 편입토지·물건조서 -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

1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자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내용	
1	사정동	65-3	임	1031	721	고상열	군산시 백토로 53,302호				자연 녹지
2	사정동	65-1	임	357	72	고상열	군산시 백토로 53,302호				자연 녹지
3	사정동	391-1	대	621	63	공유지	군산시				자연 녹지
4	사정동	64	임	1983	844	공유지	군산시				자연 녹지
5	사정동	396	전	367	276	공유지	군산시				자연 녹지
6	사정동	395	전	215	213	장경희	군산시 내사1길 23-11				자연 녹지
7	사정동	398	전	271	101	장경희	군산시 내사1길 23-11				자연 녹지

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6-4호

##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군산시 「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」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,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1. 사 업 명 :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2. 사업목적 :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
3. 사업위치 : 군산시 옥산면 일원
4. 사 업 비 : 6,000백만원 (국 4,200 , 도 540 , 시 1,260)
5. 사업기간 : 2023년 ~ 2027년 (5년)
6. 사업내용
  - 가. 기초생활기반확충
    - 힐빙어울림센터(복합청사) 조성
  - 나. 지역역량강화

- 중심지 기능강화 힐링프로그램 운영, 배후마을 문화복지 전달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, 사랑배달꾼 양성, 공동체 교류 한마당 등

다. 부대비용

-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비, 공사감리비, 사업관리비 등

7. 사업효과 : 복합청사 조성으로 행정·문화·복지·여가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강화,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활성화 도모

8. 사업시행자 : 군산시장 (위탁사업자 :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)

9.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구분	토지소재지		지 번	지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 유 자	비고
	면	리			지적면적	편입면적		
합 계					7,270	1,247		
1	옥산면	옥산리	23-10	답	139	139	전라북도 (교육감)	
2			647-1	도로	18	18	국(건설부)	
3			16-10	답	998	998	전라북도 (교육감)	
4			23-1	학교 용지	1,408	26	전라북도 (교육감)	
5			27-1	학교 용지	1,158	4	국(교육부)	
6			8	학교 용지	3,549	62	전라북도 (교육감)	

10. 기타 문의사항

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계(☎063-454-4832)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(☎063-440-592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공고 제2026-462호

## 군산 도시계획시설(학교:군산내흥초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군산시 고시 제2023-144호(2023.9.8.)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학교:군산내흥초)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

군 산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
  - 나. 명 칭 : 군산내흥초등학교 신축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 - 가. 사업의 면적 : 15,001.6㎡
  - 나. 사업의 내용 : 1동/지하1층~지상4층, 건축면적 6,899.93㎡, 연면적 13,674.29㎡ 등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
  - 나. 주 소 :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23. 9. 8. ~ 2026. 2. 28.(준공 2026.

2. 6.)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붙임 참조
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8. 관계도서 : 게재 실음생략

## [붙임]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연 번	토지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자		비고
				지적면적	편입면적	주 소	성 명	성 명	주 소	
계		1필지			15,001.6					
1	군산시 내흥동	1063	학	15,001.6	15,001.6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			

군산시 공고 제2026-501호

## 군산 도시계획시설(학교:군산신역세권유치원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군산시 고시 제2024-7호(2024.1.12.)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내흥동 105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학교:군산신역세권유치원)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

군 산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군산시 내흥동 105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
  - 나. 명 칭 : 군산신역세권유치원 신축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  - 가. 사업의 면적 : 5,000.8m<sup>2</sup>
  - 나. 사업의 내용 : 1동/지상1층~지상4층, 건축면적 2,327.28m<sup>2</sup>, 연면적 5,945.66m<sup>2</sup> 등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
  - 나. 주 소 :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24. 1. 12. ~ 2026. 2. 1.(준공 2026. 1. 31.)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붙임 참조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8. 관계도서 : 게재 실음생략

[붙임]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연 번	토지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(m <sup>2</sup> )		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자		비고
				지적면적	편입면적	주 소	성 명	성 명	주 소	
계		1필지			5,000.8					
1	군산시 내흥동	1059	학	5,000.8	5,000.8	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	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			

군산시 공고 제2026 - 542호

##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공람 공고

전북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일원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,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청 주택행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3일



군 산 시 장

### 1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

- 가. 사업명칭 :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시 행 자 :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다. 사업위치 :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일원
- 라. 사업계획
  - 1) 정비구역면적 : 65,984.70㎡
  - 2) 대지면적 : 58,669.50㎡
  - 3) 건축면적 : 12,710.25㎡ (건폐율 : 21.66%)
  - 4) 연 면 적 : 248,458.23㎡ (용적율 : 279.51%)
  - 5) 규 모 : 지하3층 ~지상 27층 아파트 17개동 외 부대복리시설
  - 6) 세 대 수 : 1,471세대

2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6.03.03. ~ 2026.03.17.

3. 공람장소

가.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(전화:063-454-3712)

나.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전화:063-464-5610)

4. 공람내용 :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계서류

5. 의견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

가. 제출방법 :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의견서 작성하여 서면 제출

나. 제출장소 :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

6.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	내 용
1	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	-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→ 120개월
2	착공 및 준공예정일 변경	- 착공예정일 : 22년 06월 → 28년 02월 - 준공예정일 : 25년 12월 → 31년 08월
3	정비사업비 변경	- 물가상승 및 계획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(368,053,820,481원 → 427,168,876,300원)
4	기반시설 면적 변경	- 부출입구 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실사용 대지경계선 선형 변경 (정비구역 면적 변경 없음)
5	단지 레벨 변경	- 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단지 레벨 변경 - 단차 극복을 위한 단지 내 외부 계단, ELEV. 위치 및 개수 변경
6	세대수, 세대유형 변경 및 평면 개선	- 단위세대 개선에 따른 세대수 변경 및 주동 형태 변경
7	지하주차장 변경	-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변경 - 설비시설 레이아웃 변경 - 주차대수 변경(2,311대 → 2,250대)
8	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변경	- 입주민 편의, 분양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 부대시설 추가(승하차 대기공간) - 작은도서관, 키즈&맘스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위치 및 레이아웃 변경
9	근린생활시설 규모 축소 및 위치 변경	- 근린생활시설-1 층수 변경 - 근린생활시설-2 위치 변경
10	기타 공정 변경 (구조, 토목, 조경, 기계, 전기, 소방)	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

#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의견서

의견 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 내용	
----------	--

「

2026년 3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군산시장

귀하

작성시참고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관련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 - 16호

## 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군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군산형 농촌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‘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’ 위원(위촉직)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0일



군 산 시 장

1. 모집인원 : 10명
2. 위원임기 : 위촉일로부터 2년간
3. 기 능
  - 가.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·시행계획 심의
  - 나. 농촌지역개발 및 재생 사업계획 심의
  - 다. 농촌공간 관련 지역 주요 시책 심의
  - 라. 기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4. 응모자격 : 아래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농업·농촌·토지 분야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·재생 관련 분야 전문

가로써 해당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
나. 전북지역 내 대학·연구소·학회·기관 등의 조교수·책임연구원·실장급 및 동등한 직위 이상인 사람

5. 선정방법 : 자체서류심사

6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가. 접수기간 : 2026. 2. 20. (금) 09:00 ~ 2. 26. (목) 18:00 까지

나. 접 수 처 :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 063-454-4832)

다. 접수방법 : e-mail 접수에 한함 ☞ e-mail 주소 : mc7458@korea.kr

7. 제출서류

가. 공개모집 지원서 1부(서식1)

나. 자기소개서(전공, 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) 1부(서식2)

다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(서식3)

라.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사본, 재직증명서 등) 각 1부.

8. 대상자 선정통지 : 추후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통지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 063-454-48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서식 1>

## 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신청서

<b>접수번호</b>		<b>위원회명</b>	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		
<b>성명</b>			<b>전화번호</b>		
<b>생년월일</b>			<b>성별</b>		
<b>주소</b>					
<b>현근무지</b>	<b>근무처명</b>		<b>부서명</b>		<b>직위</b>
	<b>주소</b>		<b>e-mail</b>		
<b>최종학력</b>	<b>학교</b>	<b>학과</b>	<b>(전공)</b>		
<b>직업군</b>	학교( ), 연구소( ), 학회( ), 협회( ), 관련 기관( ), 단체( ), 기타( )				
<b>주요경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</li> <li>·</li> <li>·</li> </ul>				
<b>특기(자격) 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</li> <li>·</li> <li>·</li> </ul>				

상기 내용과 같이 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.

2026. 2. .

신청인 : (서명)

**군산시장 귀하**

<서식 2>

## 자기소개서

성명		소속 및 직책	(소속 기관명) (직책 및 업무)		
학력	학위취득일	학교명	학위구분	졸업구분	전공분야
자격증	취득일	자격증명	인가·관리기관		
경력사항	기간	단체명	주요경력		
	~				
	~				
	~				
군산시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	위원회명		임기	비고	
기타 자기소개					

<서식 3>

##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, 제2항」에 따라 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▶ 제공받는 기관	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▶ 이용 목적	군산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
▶ 제공 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
▶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이용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
▶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2026. 2. .

신청인 : (서명)